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,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,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.(안 제2조의4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4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하거나 재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·재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,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인사혁신처장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4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하거나 재가입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·재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,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인사혁신처장 또는 시·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412